

건축 문화재 용어의 법제도적 개념 정의를 위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for the Legal Definition of Cultural Property Terminology related to the Architecture

주 상 훈*

Joo, Sang-Hun

(공학박사, 한해리터지센터 정책연구팀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definition and usage of cultural property term related to the architecture within the cultural property-related legal system and general legal system, and to present proper terminology and specific concepts that can be used for the architecture as cultural properties. In the current cultural property legislative system, terms about the architecture are diverse and obscure, and the definition of each term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in the general legal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esented the terminology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as 'a cultural property by construction act' to cover whole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o Korean architecture. And the conceptual scope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is divided into the technology and the performer related to the act, the record and the building related to the product. and Each concept needs to be specifically tailored to its object and scope. Systematic definition of terms for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he architecture can positively influence systematization of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nd management as well as empirical research and education on Korean architecture.

주제어 : 건축, 문화재 용어, 건축 문화재

Keywords : Architecture, Cultural Property Terminology, Architectural Heritage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한국건축과 건축 문화재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어,²⁾ 점차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0년대까지 건축사학 분야의 연구는 문화재보존학과 분명하게 분리되지 못한 채 이루어져 왔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점차 대상과 주

체가 확대되면서 발전해왔다.³⁾

한국건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자료⁴⁾의 활용과 함께 폭넓게 수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연구의 대상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과거의 건축물과 시설물들이며,⁵⁾ 그 대부분은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문화재⁶⁾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

* Corresponding Author : joosh924@gmail.com

1) 건축 문화재는 현행 문화재 관련 법제도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로, 그 정의의 방향과 구체적인 개념의 설정은 본 연구의 4장에서 후술하였다.

2) 근대적인 시각과 방법으로 한국건축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1902년 조사와 그 성과인 『한국건축조사보고』(1904)로 알려져 있다. (김동욱, 「20세기 건축사학의 전개」(한국건축역사학회 편, 『한국 건축사 연구 1 :분야와 시대』), 발언, 2003, 25쪽)

3) 김동욱, 앞의 글, 2003, 31~57쪽

4) 대표적인 비건축물 자료로는 조선시대의 의궤, 불교 사찰의 사적(寺蹟) 등의 문헌자료가 있다.

5) 전봉희·우동선·이우중, 「한국의 건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3호, 2004, 101쪽

6) '문화재'라는 용어를 건축물 등의 대상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경향을 따라서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용어에 관한 논의의 개요는 김봉건, 「문화재와 고적」(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387쪽 참조)

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문화재를 정의하고 있다.⁷⁾ 즉, 문화재는 “특정한 가치가 있는 유산”이며, 각각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세부 정의를 하고 있다.

표 1. 문화재의 종류

구분	세부 정의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민속문화재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각 대상의 범위가 서로 중복되어 있어, 한국건축과 관련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과거의 건축물과 시설물들은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 기념물의 ‘사적지’와 ‘시설물’, 민속문화재의 ‘가옥’ 등으로 다양하게 지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 종별로 각 가치가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도 많으며, 또 서로 다른 관리체계에 속하게 되어 서로 다른 보존·관리 방식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건축물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유형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⁸⁾ 또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문화재 관리체계의 복잡성을 증대시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8) 2016년의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건축문화재의 성격을 갖는 문화재가 유형문화재, 사적, 민속문화재 등에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 관하여, 개선의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61.5%로 조사되어, 다른 문화재 분류체계 관련 쟁점 보다 중요하게 확인되기도 하였다. (주상훈 외, 『문화재 지정·분류체계 개선 기초연구』, 문화재청, 2016, 199~222쪽)

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현재 문화재 관련 법제도에서는 건축 관련 문화재 용어로 건조물, 건축물, 시설물, 건축문화재, 가옥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각 용어의 개념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며 일반 법제도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와도 다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건축 문화재 용어의 사용 현황과 개념을 현재의 문화재 관련 법제도 및 일반 법제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적절한 법제도적 용어와 그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각 용어의 법제도적 정의와 용례를 검토하여 그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문화재 유형 구분의 방법 속에서 확인되는 개념적 범위를 검토하여, 건축 문화재 용어의 개념 구체화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2. 국내 법제도에서의 건축 문화재 용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과거의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이 건축 문화재를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재 법제도에서 각 용어의 사용 사례와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의 다른 법제도에서의 동일한 용어의 사용 현황과 개념을 확인해 보았다.

2.1. 문화재 법제도에서의 건축 문화재 용어

현행의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의 대상으로서 건축 문화재를 통칭하는 용어는 없으며, ‘건조물’, ‘시설물’, ‘가옥’ 등의 용어가 각 문화재 유형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 용어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는 「문화재보호법」 및 동 시행령의 본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을 규정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별표 1]⁹⁾에서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건축 문화재 관련 용어와 그 대상 범위는 유형문화재와 사적에 대한 지정기준에서 확인되는데, 유형문화재의 한 종류인 건조물을 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로 구분하고 그에 해당될 수 있는 대상을 나열하였으며, 사적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용어 개념의 한정 없이 포함될 수 있는

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대상만을 나열하고 있다.

표 2.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 관련의 보물 지정기준

종류	지정기준		
보물	건조물	목조건축물류	당탑(堂塔), 궁전, 성문(城門), 전랑(前廊),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樓亭),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塼塔), 승탑(僧塔) 및 석종(石鍾),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교(石橋), 계단(戒壇),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첨성대, 당간지주,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
		분묘	분묘 등의 유구(遺構) 또는 건조물, 부속물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청사(廳舍), 학교, 병원, 역사(驛舍), 성당, 교회 등

표 3. 사적 중 시설물의 지정기준

종류	지정기준
사적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다.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마. 제단, 지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법령에서는 ‘건조물’이나 ‘시설물’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의나 설명을 찾을 수 없으나,¹⁰⁾ 문화재청 훈령 제

455호인 「건조물 보존·관리규정」¹¹⁾에서 각 용어들의 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제3조(용어 정의)는 ‘건조물’, ‘고건물’, ‘기타 시설물’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조물’은 ‘고건물, 기타 시설물, 관람과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 등’으로, ‘고건물’은 ‘정전, 침전, 문루, 재실, 정자각, 비각 등 목조건축물’로, ‘기타 시설물’은 ‘배수로, 담장, 석축, 석조물, 홍살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재청 소관의 법제도에서 확인되는 건축 문화재 용어는 ‘전통건축’, ‘전통 건조물’, ‘부동산문화재’, ‘건조물문화재’, ‘건축문화재’ 등이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41조의2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한다.”이며, 제1호는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전통건축’에 대한 수리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며, 또 부재와 재료 등의 산출 대상으로서 ‘전통건축’을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서 전통건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재단의 홈페이지에서는 지정문화재 중에서 유형문화재의 건조물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¹²⁾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은 전통 건조물부재보관소¹³⁾ 운영을 위한 규정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의 제1항은 “전통건조물부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중 부동산문화재로서 건조물문화재를 구성하는 철재·목재·석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통건조물’이라

10) 「문화재보호법」에 건조물이라는 용어는 일부 조문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나, 현재적 관점에서만 사용되고 있어 문화재 관련 용어로 보기는 어렵다.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휴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7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조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11) 「건조물 보존·관리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에 따라 유적관리소, 궁·종묘 및 조선왕릉 건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궁관리소 및 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관할의 문화재 및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12)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홈페이지에서는 전통건축을 “우리나라의 기후 및 풍토, 사회 및 문화, 정치 및 종교, 재료 및 기술,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해 형성되어 이어져 왔으며,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통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건축”이라 설명하며, ‘전통건축문화재’의 지정현황으로 ‘목조’와 ‘석조’를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www.kofta.org, 2018년 7월 14일 접속)

1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다.

는 용어와 ‘부동산문화재’, ‘건조물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 용어에 대한 더 이상의 개념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정문화재 중 부동산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 중의 건조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재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중 다시 건조물문화재를 전통건조물이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은 국가민속문화재의 명칭 부여 방법을 규정한 제도이며, 제2조(적용 범위)는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가옥 등의 건조물 문화재의 명칭 부여에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는 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하여 ‘건조물 문화재’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침에서는 국가민속문화재 중 가옥 등을 건조물 문화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위원회 규정」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에는 ‘건축문화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 규정」의 제5조는 문화재위원회의 분과로서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건조물’ 용어를 ‘건축문화재’라는 용어로 단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¹⁴⁾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에는 연구소의 하부조직 중의 하나로 ‘건축문화재연구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문화재연구실의 업무 분장사항으로 모두 11개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¹⁵⁾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의 ‘건축문화재’가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중의 건축문화재, 민속마을 등 건조물군 등으로 대상이 더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문화재 법제도에서 건축 문화재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각 용어의 개념적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건조물’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사용의 대상이 유형문화재의 일부로 한정되면서 하위 법제도에서 개념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 제도의 운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용어들이 개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2. 일반 법제도에서 관련 용어의 개념과 정의

문화재 법제도에서 확인되는 건축 문화재 용어로는 건조물, 고건물, 시설물, 전통건축, 건조물문화재, 부동산문화재, 건축문화재 등이 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에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제도에서의 규정을 검토하여 각 용어의 정의와 개념적 범위를 확인해 보았다.¹⁶⁾

먼저 ‘건조물’이라는 용어는 현행 법제도 중 모두 37건에서 확인되나, 이들 법령 모두에서 법 적용 대상의 설명 과정에서 등장할 뿐, ‘건조물’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법률용어사전』에서는 건조물을 “형법상 주거 또는 저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조물이라 하기 위하여는 지붕이 있고 담 또는 기둥으로 지지되어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 사람이 출입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⁷⁾ 이러한 건조물에 대한 해석은 「형법」의 제13장(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에서 제166조가 각각 현주건조물 등에서의 방화, 공용건조물 등에서의 방화, 일반건조물 등에서의 방화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서 확인된다.

문화재 관련 법제도의 경우에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당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건조물 용어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¹⁸⁾에 의거한 ‘국보 및 중요문화재 지정 기준(國宝及び重要文化財指

14) 문화재위원회에는 모두 8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가 있다. (「문화재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7056호)

15)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의 제12조제6항은 건축문화재연구실의 분장사항으로, 1. 건축문화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건축문화재의 진흥 기법·재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건축문화재의 보존·복원·수리·정비에 대한 국내외 공동연구·기술협력 및 학술 교류, 4. 건축문화재에 대한 기록 수집·작성·보존, 5. 중요 유적의 보존·복원·수리·정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6. 중요민속문화재·등록문화재(건축문화재에 한한다)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고도 등 역사문화경관 보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민속마을 등 건조물군의 보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세계유산(건축문화재에 한한다)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0. 문화재청 등 국가기관이 행하는 건축문화재 관련 정책 연구 지원, 11. 그 밖에 건축문화재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6) 일반 법제도에서의 용어도 법령에 따라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학술적인 논의를 거쳐 명료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 용어인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법제도적 사용 사례를 참조하는 방법으로서 일반 법제도에서의 용어 정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17) 현암사 편집부,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16

18) 일본의 문화재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연혁은 심경미 외,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문화재청, 2014, 21~126쪽을 참고할 수 있다.

定基準)’에서는 ‘건축물(建造物)’ 유형에 대하여 “건축물, 토목구조물 및 그 밖의 공작품(建築物、土木構造物及びその他の工作物の...)”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⁹⁾ 즉, 건축물 용어를 건축물을 비롯하여 토목구조물 및 기타 공작품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건축물’에 대한 조합어로 ‘근대건축물’이라는 용어가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확인된다.²⁰⁾ 가장 빨리 제정된 「부산광역시 근대건축물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2조는 근대건축물을 “19세기 개항기부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정의하여, 건축물을 건축물과 시설물의 상위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물’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용어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기본법」 제3조제1항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2조제2항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에 대한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2조제1항은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도로, 교량, 터널, 방파제 등의 토목시설물과 일정한 면적 이상의 대형 건축물 등을 아우르고 있다.²¹⁾

이러한 시설물과 건축물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 용어가 현행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정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정의하고, 시설물과 건축물에 관한 공사를 하나의 범주로 관리하

고 있기도 하다.²²⁾

‘고건축’ 용어는 전술한 「건축물 보존·관리 규정」 이외에는 「조선왕릉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지침」²³⁾에서만 확인되는 용어로, 일반 법제도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의 진단제라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의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등에서 사용된 ‘고적’이라는 단어가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되며,²⁴⁾ ‘고미술’과 같은 조어의 사용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다.²⁵⁾ 1916년 제정된 「고적 및 유물보존 규칙」에서 고적은 탑, 비, 종, 금석물, 당간, 석등 등의 유물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역사적 유적인 선사유적, 고분 및 도성, 궁전, 성채, 관문, 교통로, 역참, 봉수, 관부, 사우, 단묘, 사찰, 도요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였다.²⁶⁾

‘전통건축’이라는 용어 역시 다른 법제도에서는 사용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용어이다.²⁷⁾ 하지만, 이와 유사하

2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정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23) 조선왕릉관리소예규 제9호, 2016.6.21

24) 김봉건, 앞의 글, 2013, 388쪽

25) 김동욱은 1970년대 한국건축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 시기에 ‘고건축’이라는 어휘나 ‘전통건축’이라는 비학술적인 용어가 널리 일반화된 것은 이러한 건축사학 본연의 미숙함에서 빚어진 결과의 하나라고 하겠다.”라고 언급하였으며, 해당 각주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고건축”이라는 어휘는 ‘고미술’과 60년대부터 널리 일반화되었는데, 그 어휘가 지칭하는 대상이 매우 모호하다. 그 개념은 현대건축 또는 현대미술에 대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현대건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건축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게 되면, 과거의 건축에 대한 역사성이나 시대적 변천의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전통건축’이라는 용어 역시 마찬가지로 ‘전통’과 ‘현대’의 이분법적인 대립된 개념으로 삼는 것으로, 건축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도외시한 비학술적인 용어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김동욱, 앞의 글, 2003, 40쪽)

26)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 제1조 본령에서 고적은 패총, 석기, 골각기류를 포유(包有)하는 토지 및 수혈 등의 선사유적, 고분 및 도성, 궁전, 성채, 관문, 교통로, 역참, 봉수, 관부, 사우, 단묘, 사찰, 도요 등의 유적 및 전적, 기타 사실(史實)과 관계 있는 유적을 말하며, 유물은 오래된 탑, 비, 종, 금석물, 당간, 석등 등으로 역사, 공예, 기타 고고 자료가 될 만한 것을 말한다.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국립중앙박물관)

27) 전통건축 용어와 유사한 공식적인 용례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목장,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Daemokjang, traditional wooden architecture)”이 있다.

19) 文化廳文化財部, 『文化財關係法令集』, 2015, 42쪽
 20) 2018년 현재 부산, 대전, 공주, 창원, 통영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게 '전통'²⁸⁾과 일반명사로 구성된 용어에 대한 법률들은 확인된다. 이들 법률에서는 각각의 법제도 운영을 위한 서로 다른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통'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도록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²⁹⁾

하지만 '전통건축' 용어가 제도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못한 것은 한국건축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다. 김일현은 “한국의 현실에는 서구에서 통용된 전통의 의미를 그대로 투사하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중략) 한국에서는 과거에 목조건축이 주요했기 때문에 전통이 현대적 용도에 맞는 유형으로 발전하기 어려웠고, 개발주의로 도시 구조가 격변해서 준거가 될 만한 토대가 없어진 것도 서양과 우리가 전통의 현대적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다.”라고 그 원인을 설명하기도 하였다.³⁰⁾ 또, 이상현은 '전통건축'이 한국 건축의 고유성에 대한 이론화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기도 하였다.³¹⁾

'부동산문화재' 용어에서 사용되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이다. 제99조 제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항은 동산을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그 상위 개념으로 부동산과 동산을 합하여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제98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즉, '부동산'은 관리 가능한 대상 중에서 장소의 이전이 불가능한 토지 및 정착물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부동산문화재'는 장소의 이전이 불가능한 문화재의 총합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문화재' 용어에서의 '건축'은 다양한 개념적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³²⁾ 「건축기본법」 제2조는 '건축'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³³⁾ 즉, 물건이 아닌 행위로 정의되어 있으며, 행위의 대상으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규정하고 있다. '공간환경'은 동법 동조에 따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에서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어, 대상이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으며 행위의 범위 또한 현상 변경의 관점에서만 규정되어 있다.

반대로 '건축' 용어를 대상물을 지칭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는 '공공건축'³⁴⁾을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라고 규정하여, '건축'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직접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건축문화재' 용어와 유사한 조합어의 사례로는 '건축자산' 용어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건축자산'에 대하여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있다. 즉, 「건축기본법」의 '건축' 행위 대상인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28) '전통' 용어에 관한 정의는 연구 분야 및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이에 대하여 살피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 일부 선행연구의 논의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9)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전통무예진흥법」 제2조), 전통사찰은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전통소싸움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으로 규정(「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전통주는 가. 무형문화재보유자가 제조한 술, 나.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다. 지역특산주(「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30) 김일현, 「전통과 한국성」(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709~710쪽

31) 이상현,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한국 전통건축의 이론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24권, 6호, 2015

32) '건축'이라는 말은 19세기 말 일본에서 처음 쓰였는데, '구조물을 짓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였으며, 건축의 결과물로서 정의되는 건축물 혹은 건물이라는 말도 법률적 필요에 따라 공식화되었다. 이후 건축이라는 말에 서양의 아키텍처(Architecture)의 의미가 부여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중첩되게 되었고, 건축은 법률, 공학, 미학의 범주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쓰이며 동사이자 명사이고 보통명사이자 추상명사가 되었다. (이강민, 「건물과 건축」(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58~59쪽)

33) 이러한 정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건축서비스' 용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건축서비스'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34) 공공건축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대상의 성격, 목적,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여러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규철 외,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더하여 시설물까지로 대상의 폭을 넓히고 있다.

3. 문화재 유형 구분과 건축 문화재

건축 문화재 용어의 정의를 위해서는 다른 문화재와 건축 문화재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개념적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문화재 유형별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보다는 세부 유형의 나열을 통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유형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문화재 유형의 구분의 현황과 관련된 개선 논의의 검토를 통해 건축 문화재 용어의 정의와 개념의 구체화 방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3.1. 문화재 유형 구분의 현황

현행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유형 구분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문화재 보존 관계 제도의 연속선상에서 구체화되어 왔다. 1916년에 제정된 「고적유물보존규칙」에서의 고적³⁵⁾과 유물³⁶⁾은 현행 제도의 기념물 중 사적과 유형문화재의 일부(동산문화재)에 해당된다. 1933년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서는 기존의 유물을 보물³⁷⁾로 개칭하면서 그 대상에 건조물을 추가로 포함하였고, 고적 유형을 확장하여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추가하였다.³⁸⁾ 즉, 건축 문화재는 1916년 보존규칙에서는 고적에만 해당될 수 있었으나, 1933년의 보존령 이후에는 보물에도 해당될 수 있게 되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의 4종으로 구분하였으나, 민속자료 외의 나머지는 기존의 제도에 따른 개념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 이후, ‘사적 및 명승’이 ‘사적’과 ‘명승’으로 분리되고, 민속자료가 민속문화재로 개칭되는 등의 변화는 있었지만,

각 문화재 유형별 속성이나 개념의 근간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³⁹⁾

현행 문화재 유형의 최상위 구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이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는 형태의 유무로 분류되나, 기념물에 대해서는 개념적인 정의가 없으며, 민속문화재는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물리적 형상으로서의 ‘건조물’은 유형문화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유형의 건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로, 기념이 될 만한 건축 문화재는 기념물인 사적으로, 경치가 좋은 곳에 지어진 건축 문화재는 기념물인 명승으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건축 문화재는 민속문화재의 유적건조물이나 민속마을로 지정될 수 있게 되며, 실제로 ‘건조물’로서의 건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인 ‘국보’와 ‘보물’, ‘사적’, ‘명승’, ‘민속문화재’에 산재되어 지정되고 있다.

한편, 문화재 관련 행정정보에서는 이와는 다른 방식의 문화재 유형 구분 방식도 찾아볼 수 있다. 문화재청이 국가문화유산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문화재 ‘유형분류’⁴⁰⁾는 「문화재보호법」에서의 구분과 달리, ‘유적건조물’, ‘유물’, ‘기록유산’, ‘무형문화재’, ‘자연유산’, ‘등록문화재’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분류를 제시하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지만, 「문화재보호법」 상의 유형문화재를 건조물과 유물, 기록유산으로 나누고, 유형문화재의 건조물과 기념물 중의 사적, 민속문화재의 유적건조물을 통합하여 ‘유적건조물’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형문화재를 삼분하는 것에는 동산-부동산의 구분 개념이 적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⁴¹⁾

이와 비슷한 관점의 문화재 분류를 문화재의 조사와 연구를 위한 국가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화재연구소는 ‘고고연구실’, ‘미술문화재연구실’, ‘건축문화재연구실’, ‘보존과학연구실’, ‘복원기술연구실’, ‘자연문화재연구실’, ‘안전방재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⁴²⁾ 사적 중 ‘문화유적’과 매장문화재를

35) 폐총, 석기, 곡각기류를 포함하는 토지 및 수혈 등의 선사유적·고분과 도성·궁전·성곽·관문·교통로·역참·봉수·관부·사우·단묘·사찰·도요 등의 유적 및 전적 기타 사실에 관계있는 유적

36) 연대를 거친 탑·비·종·금석물·당간·석등 등으로서 역사·공예 기타 고고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

37) 건조물·전적·서적·회화·조각·공예품 기타의 물건으로서 특히 역사의 증경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

38) 폐총·고적·사지·요지 기타의 유적, 경승의 지, 또는 동물·식물·지질광물 기타 학술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존의 필요가 인정되는 것

39) 보다 구체적인 문화재 법제도 및 문화재 유형의 변천 과정은 주상훈 외, 앞의 책, 2016, 11~36쪽 참고

40)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 2018년 7월 14일 접속

41) ‘유적건조물’의 하위 분류로 주거생활, 정치국방, 교통·통신, 교육문화, 유물분포지·유적산포지, 무덤, 산업생산, 종교신앙, 인물사건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 유형의 정의나 범위는 불분명하다.

대상으로 하는 고고연구실, 크게 유형문화재 중 동산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술문화재연구실과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 사적의 일부, 민속문화재 중 건축문화재, 고도, 민속마을 등을 담당하는 건축문화재연구실,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문화재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업무분장은 문화재 조사·연구의 관점에서는 건축으로서의 문화재가 고고학적인 관점의 문화유적이거나 미술사 및 문헌사적인 관점에서의 문화재와 별도로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문화재연구실의 업무 대상인 건축문화재의 정의가 불분명한 것은 법제도적 한계일 것이다.

3.2. 유형 구분의 개선론과 건축 문화재의 분류

「문화재보호법」의 유형 구분 방식은 그 개념적 범위가 모호하고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있다는 점과 제도적 구분 유형이 실제적인 관리 행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2005년의 『문화재 분류체계』 연구보고서는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성과이다.⁴²⁾ 개선안은 기존의 유형문화재에서 ‘기록유산’을 분리하고, 기념물 중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자연유산’으로 통합하며, 기념물 중 사적을 유형유산 이하의 ‘유적, 건조물’로 통합하는 것이다. ‘유적, 건조물’의 하위분류로는 주거생활, 무덤, 정치국방, 산업생산, 교통통신, 종교문화, 교육문화, 인물사건, 매장의 9가지를 제시하였다. 즉, 이 개선안에서 유형의 건축 문화재는 그 대부분이 유형유산-유적건조물에 속하게 되며, 자연경관 중심의 건축 문화재의 일부만이 자연유산-명승에도 부분적으로 속하게 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⁴⁴⁾ 보고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명하고 전체를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문화유산’ 하위에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구분하고, ‘유형문화유산’ 하위에 ‘사적’, ‘건축’, ‘미술’, ‘기록’, ‘민속’을 편제하였다. 이러한 문화재 재분류는 전체 문화재 분류의 위계를 명료하게 하였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의 개념적 중복을 해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가 유형문화유산으로 통합되긴 하였지만, 현재의 문화재 유형과 같이 건축 문화재는 사적, 건축, 민속 등으로 개념적 중복 속

에서 구분되고 있다.

건축 문화재에 관한 직접적인 논의는 김홍식의 글에서 확인된다.⁴⁵⁾ 넓은 범위에서의 건축적 요소(건축, 토목, 조경 등)가 개입된 문화재와 아닌 문화재를 구분하고, 전자를 건축문화재로 후자를 비건축문화재로 구분하였는데, 일반적인 건조물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련된 기구 등의 동산문화재와 기술 등의 무형문화재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인식도 가능하다는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건축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지정분류체계 개선 기초연구』에서는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각 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에 맞추어 구조화된 관리도구”로 정의하고,⁴⁶⁾ 분류체계의 변천사, 문화재 관련 정책, 외국사례 등에서의 시사점을 종합 검토하였다. 가치평가요소에 의한 분류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여 구분되는 문화재 유형이 서로 독립적이고 동등한 분류체계, 수평적으로 확장 가능한 범용적인 분류체계, 다양한 문화재 유형 및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분류체계, 한국 및 동아시아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분류체계로의 4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물리적인 대상으로서의 건축 문화재는 인위적이고, 유형적이며, 이동 불가능한 문화재로서 정의되며, 그 세부 유형은 경관성 및 예술성과 인문성 및 생활문화성의 가치에 따라 구분되게 된다.⁴⁷⁾

덧붙여 세계유산의 지속적 등재과정에서도 건축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세계유산의 분류체계에 따른 국내 문화재의 등재와 이를 위한 후속 관리를 위한 행정이 부분적으로 합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World Heritage),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은 다시 문화유산, 복합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⁴⁸⁾ 그리고 문화유산은 기념물(Monument), 건조물군(groups of

45) 김홍식, 「건축문화재 개념의 범주와 변화」, 건축, 2009

46) 주상훈 외, 앞의 책, 2016, 7쪽

47) 주상훈 외, 앞의 책, 2016, 464~467쪽

48)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42)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2조

43) 장호수 외, 『문화재 분류체계』, 문화재청, 2005

44)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2008

buildings), 유적지(sites)로 세분하고 있다.⁴⁹⁾

기념물은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이고, 건조물군은 ‘건조물군: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 유적지는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기본적으로 단독-집합 등 공간단위의 측면에서의 구분이라 할 수 있지만, 유적지(Site)에 대해서는 기념물 및 건조물군과 달리 고고인류학적 개념 및 자연성을 추가로 규정하여 다른 관점에서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위계적으로 맞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⁵⁰⁾

4. 건축 문화재의 개념 구체화를 위한 검토

건축 문화재 용어의 개념 정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포괄적인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법제도적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 대상의 개념적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용어의 개념을 검토해보았다.

4.1. 건축 문화재 용어 정의의 방향

문화재 법제도에서의 건축 문화재 용어는 다양하고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건조물’이지만,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는 문화재 법제도에서도 일반 법제도에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화재보호법」은 유형문화재로서 건조물을 규정하고 건조물의 부분으로서 각종 건축물류와 분묘를 제시하여 건조물을 건축물의 확장 개념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건조물에 포함되는 석조건축물류에는 일반 법제도에서의 건축물의 개념적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운 석물 등과 분묘도 포함되어 있어,⁵¹⁾ 그 개념적 범위를 규정하기 모호한 상태이다.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건조물 보존·관리규정」에서는 건조물을 고건물, 기타 시설물, 관람과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문화재의 종류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념물에서의 ‘시설물’과 민속문화재에서 ‘가옥’ 등의 용어로 지칭되는 문화재도 대부분 형태적으로는 건조물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문화재 법제도에서는 건조물을 유형문화재의 하위에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문화재로서의 건조물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때문에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유적건조물’로 각 문화재를 통합하여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에서는 ‘건축문화재’ 용어를 유형문화재의 건조물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⁵²⁾

즉, 현재 문화재 용어 사용의 모호함과 문화재의 지정·등록 현황을 고려하면, 다양한 한국건축 관련 문화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용어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유형문화재의 건조물(목조, 석조, 조적조 및 콘크리트건축물류, 분묘)과 사적의 시설물, 민속문화재의 가옥과 민속마을 등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현상을 기준으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문화재 관련 용어 중에서 ‘건조물’, ‘건축물’, ‘시설물’ 등은 모두 현상⁵³⁾에 따라 대상을 한정하는 용어이다.⁵⁴⁾ ‘건축문화재’ 용어 역시 현재의 문화재 관계 법제도에서는 ‘건조물’ 문화재 또는 그보다 넓은 범위의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 즉 대상을 한정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건축’과 ‘문화재’라는 조합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문화재’ 용어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⁵⁵⁾

나아가 세계유산의 대상이 기념비적 건축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점차 그들이 군집하여 나타내는 집합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건물군으로 확대되고 있다⁵⁶⁾는

52) ‘건축문화재’라는 용어가 두 규정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은 특이할 만한 것으로, 문화재의 가치 판단 절차와 조사·연구를 위한 규정이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53) 보존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보존의 개입 조치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때의 상태를 ‘현상(現狀)’이라고 하며, 문화재 보존의 출발점이 되는 상태이다.(강현, 「건축문화재의 원형 개념과 보존의 관계」, 문화재, 49권, 1호, 2016, 126쪽)

54) 부동산문화재, 고건물, 전통건축 등의 용어도 모두 그 개념 정의의 방법은 다르지만 현상을 기준으로 대상을 규정한다는 관점에서는 동일하다.

55) 「건축기본법」 제2조는 ‘건축’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이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56) 이화연, 박소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원칙의 경향과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4권, 3호, 2018, 81쪽

49)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조, 한국번역어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의 세계유산 소개 참조.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2018년 7월 14일 접속)

50) 주상훈 외, 앞의 책, 2016, 267쪽

51) 「문화재보호법」과 동 시행령은 보물-건조물-석조건축물류의 대상에 석탑, 승탑, 석종, 비갈, 석등 등 일반 법제도에서 건축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체를 가지고 있는 것)에 해당될 수 없는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

점은 건축 문화재 용어의 개념에 건축물 외에도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도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 관련 용어 중 가장 개념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정의가 가능한 ‘건축문화재’ 용어를 대상으로 그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하며, 현재 문화재 관련 법제도에서의 개념적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재를 ‘건설 행위에 의한 문화재’로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개념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다양한 현상의 대상을 통합할 수 있도록 현상에 기초하여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건축’ 행위를 포함한 ‘건설’ 행위에 따른 결과물로서의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의 ‘건축문화재’ 개념을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건설’은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시설물, 구조물 등에 관련된 행위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⁵⁷⁾ 과거로 갈수록 현재와 같은 건축, 토목, 조경 등의 산업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으나,⁵⁸⁾ 현재 다른 법제도에서의 용어 정의 현황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분묘 등과 같은 매장문화재와 협의적 의미의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석물 등을 ‘건축문화재’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개념적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원형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적⁵⁹⁾, 건축물 그 자체가 아닌 주변의 공간 및 경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념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형상이나 양식이 고정된 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고, 외기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구조물이기 때문에 수리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존속하기 힘들다는 특성⁶⁰⁾을 가지고 있는 건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도 유리하다.

4.2. 건축 문화재의 개념 구체화를 위한 검토

건축 관련 문화재를 ‘건축문화재’, 즉 ‘건설 행위에 의한 문화재’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세부 대상에 따

라 그 구체적인 개념적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술한 ‘건축문화재’의 개념적 범위에 속할 수 있는 대상은 먼저 행위에 의한 산물들과 행위 그 자체에 관한 것들로 나뉠 수 있다. 전자에는 각 행위 단계별로 다양한 산물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후자는 각 기술 그 자체와 그 기술의 수행자로 구분될 수 있다.

‘건축문화재’에 속할 수 있는 각 기술과 그 수행자는 현재의 문화재 체계에서는 무형문화재⁶¹⁾에 해당한다. 단청장(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대목장(제74호), 제와장(제91호), 석장(제120호), 번와장(제121호) 등이 건축행위의 수행자로서의 지정된 무형문화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체계에서 각 무형문화재는 현재까지 전승된 무형의 유산으로 한정되어 그 행위의 산물인 과거의 유형문화재와는 개념적으로는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며,⁶²⁾ 문화재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밝혀진 과거의 기술은 문화재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진정성(authenticity)에 대하여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등재의 조건으로 ‘디자인’, ‘재료’, ‘주변환경’의 진정성과 함께 ‘기술’의 진정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은 제작 당시의 기술이자 원재료에 남아있는 기술을 의미한다.⁶³⁾ 기록되지 못한 무형적 문화는 각 유형문화재에 흔적으로 남아 현재에 전달된 것으로, 각 시대별, 지역별, 대상별로 다양한 기술이 확인될 수 있으며, 원재료에 남아 있는 기술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다.⁶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축문화재’의 부분으로서의 ‘기술’은 현행 무형문화재로서의 ‘기술’ 보다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 대상 범위가 확장되며, 각 과정에서의 행위에 따른 산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구체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위에 의한 산물로서의 ‘건축문화재’는 다시 세분하여 행위 과정에서 생산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문화재와 최종 결과물인 건축물, 시설물, 공간환경 등(이하 ‘건축물 등’)의 문화재로 구분될 수 있다.

57)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행위로서의 ‘건축’ 용어의 사용 개념과 ‘건설공사’의 용어의 사용례를 참고할 수 있다.

58) 같은 맥락에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종합문화재수리업인 보수단청업의 업무 범위를 ‘건축·토목공사 및 단청의 시공’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9) 건축물은 유물과 달리 그 것이 최초로 만들어진 이후에 그 상태 그대로 형상이나 양식이 고정된 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 (강현, 앞의 글, 2016, 121쪽)

60) 강현, 앞의 글, 2016, 121쪽

61)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62) 언급한 5건의 국가무형문화재 중, 대목장, 제와장, 번와장은 ‘전통기술-건축’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건축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단청장은 ‘전통기술-미술’로 석장은 ‘전통기술-공예’로 분류되고 있다.

63) 강현, 「건축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전통기술 논의 고찰」, 문화재, 47권, 3호, 2014, 213~214쪽

64) 강현, 위의 글, 2014, 214쪽

행위의 최종 산물인 건축물 등의 문화재는 건립 이후 지속적인 변화를 거치기 때문에, 그 원형과 변천 과정을 소상히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의사결정과정과 방법론을 보여주지는 않는다.⁶⁵⁾ 이러한 관점에서 행위 과정에서의 기록물 및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기록물⁶⁶⁾은 ‘건축문화재’의 부분으로서 각 행위 수행의 결과물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뿐더러 그 시대 건축 문화의 또 다른 산물이 될 수 있지만,⁶⁷⁾ 현재 문화재 체계에서는 유형문화재인 ‘기록유산’으로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⁶⁸⁾

즉, 현행 체계에서 행위에 관한 기록물은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서적·전적’으로서 규정되고 있다고 한다면, ‘건축문화재’의 부분으로서의 기록물은 기록된 내용 자체에 보다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근대기 이후 건설공사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물⁶⁹⁾을 문화재로서 평가하고 보존·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축 행위에 의한 문화재로서 최종 산물인 건축물 등의 개념적인 범위는 더 세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건축물, 시설물, 공간환경 등의 용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제도의 정의를 적용하게 되면 그 개념 적용의 대상에 대한 판단이 현재적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재는 현재의 것만을 대상으로 한 개념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유산’이기 때문에 용어의 개념적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재의 현상에 따라 그 원형⁷⁰⁾을 상실한 문화재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재

를 구분하여 ‘건축문화재’의 개념적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문화재’는 현재의 문화재 지정 현황을 고려하면, 궁궐, 주택 등의 건축물과 석탑 등의 시설물, 성곽, 정원 등의 공간환경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각각의 대부분은 유형문화재, 사적, 명승, 민속문화재 등에 산재하여 지정되어 있으며,⁷¹⁾ 이들 문화재는 현재 일반 법제도에서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개념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대상이다.

반면, 원형을 상실한 건축물 등의 문화재⁷²⁾는 현재적 시점에서의 현상 그 자체로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개념적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으로, 현행 문화재 법제도에서 유적(遺蹟)은 유형문화재나 민속문화재가 아닌 사적으로 지정되고 있다.⁷³⁾ 즉, 현상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 등과 원형을 상실한 유적은 현행의 문화재 체계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문화재로서 묶이기 어려우나, 건축 행위에 의한 산물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그 현상이 건축물, 시설물 등의 법제도적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건축문화재’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통합될 수 있다.⁷⁴⁾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건설 행위에 의한 문화재’로서의 ‘건축문화재’는 [표4]와 같이 세분화된 개념으

65) 전봉화·우동선·이우중, 앞의 글, 2004, 101쪽

66) 정부 기관의 경우,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67) 건물의 상량문과 목서, 불교 사원의 사적 등 다양한 건축 기록은 현재 남아 있지 않은 건물은 물론이고 남아 있는 건물에서도 외형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으며, 건축 기록은 한 시대 문화의 산물로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측면도 있다. 각 기록을 통해 그것이 작성될 시점에 당대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욱, 「건축 기록의 문화」 (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67~69쪽)

68) 조선시대 국가에서 주관한 건설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인 ‘영건도감의례’는 현재 보물 제1901호 ‘조선왕조의례’의 부분으로서 지정되어 있다.

69) 근대적 건설공사 과정에서는 설계도면 등 다수의 기록물이 생산되어 사용된다. 현재 광주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있는 ‘전라남도도청회의실신축설계도’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이 문화재는 도면 그 자체로서만 지정되어 있을 뿐, 도면의 생산 과정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기록문헌 및 관계서류는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70) 문화재로서의 원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답론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건립 당시의 상태’ 정도의 협의적 의미로서 용어를 사용하였다. 원형 개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강현, 앞의 글, 2016을 참고할 수 있다.

71) 현행 문화재 법제도에서 유형문화재의 개념은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 검토가 가능하다. 첫째는 유형의 문화재, 즉 형태가 있는 문화재이다. 이는 무형문화재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둘째는 유형으로서의 문화재, 즉 유형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갖는 문화재이다. 이는 특히 사적이나 민속문화재와의 관계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데, 사적의 가치 판단이 대상물의 형태적인 가치보다는 관계된 역사성, 인물성 등에 의한다는 점, 민속문화재가 국민생활의 이해에 필요한 민속적인 문화재라는 점이다.

72) 건축 행위에 의한 유적에 대하여 고고학계에서는 ‘건축유적’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조원창은 발굴조사와 해석방법을 정리한 그의 책에서, 건물지는 건축유적의 한 부분에 해당되며, 고고학에서의 건축유적은 흔히 지상 건물지로 귀결되고 있으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행위뿐만 아니라 반드시 토목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건물지 유구뿐만 아니라, 토목공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조원창, 『건축유적의 발굴과 해석』, 서경문화사, 2018, 778~779쪽)

73) 원형을 상실한 건축문화재인 유적에 대해서 복원, 재현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유적 또한 건축문화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74)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원형을 상실한 문화재인 유적과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재인 건조물을 ‘유적건조물’이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도 유적과 건조물이 단일 개념으로 통합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로 구체화될 수 있다. 즉, ‘건축문화재’는 행위와 관련된 문화재인 기술과 수행자, 행위의 산물로서의 문화재인 기록물과 건축물 등으로 세분하여 정의되어야 하며, 각 세부 대상별로 개념적 적용 범위는 현재의 문화재 체계에서의 범위보다 공시적, 통시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표 4. 건축문화재 용어의 세부적인 개념과 범위

정의	세부 개념			
건설 행위에 의한 문화재	행위	기술	건설 행위를 위한 기술 : 현존의 기술뿐만 아니라, 과거 기술의 자취도 범위에 포함	
		기술 수행자	현행 무형문화재 개념에 따른 전승자	
	산물	기록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된 건설 행위에 관한 기록 내용 : 현행 기록유산의 형태적 개념이 아닌 내용 중심의 개념	
		건축물 등 (건축물, 시설물, 공간환경)	원형 유지	현행 유형문화재의 건조물, 사적과 명승 중 건축물 및 시설물, 공간환경, 민속문화재 중 건축물 등
		원형 상실	행위의 시점에는 건축물 등이었던 문화재(현행 기념물의 사적 중 유적 등)	

5. 결론

이 연구는 건축 문화재 용어의 사용 현황을 현재의 문화재 법제도 및 일반 법제도에서 확인해 보고, 건축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와 그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해보고자 한 것이다.

학술적인 연구에서의 용어는 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법제도에서의 용어는 분명하고 일관된 정의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 법제도에서 건축 문화재에 관련된 용어들은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용어의 개념도 일반 법제도에서의 보편적인 정의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건축 문화재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용어로서 ‘건설 행위에 의한 문화재’로서의 ‘건축문화재’ 용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건축문화재’의 개념적 적용 대상을 건설 행위와 관련된 ‘기술’ 및 ‘수행자’, 그리고 산물로서의 ‘기록물’과 ‘건축물 등(건축물, 시설물, 공간환경)’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검토하여 적용 범위를 확인하였다.

건축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용어 정의와 개념의

구체화는 문화재 보존·관리의 체계화뿐만 아니라, 한국건축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와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건축문화재’가 독립된 유형이 되어야 하는가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며, 다른 문화재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현, 「건축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전통기술 논의 고찰」, 문화재, 47권, 3호, 2014
2. 강현, 「건축문화재의 원형 개념과 보존의 관계」, 문화재, 49권, 1호, 2016
3.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2008
4. 김동욱, 「건축 기록의 문화」(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5. 김동욱, 「20세기 건축사학의 전개」(한국건축역사학회 편, 『한국 건축사 연구 1 :분야와 시대』), 발언, 2003
6. 김봉건, 「문화재와 고적」(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7. 김일현, 「전통과 한국성」(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8. 김홍식, 「건축문화재 개념의 범주와 변화」, 건축, 2009
9. 文化廳文化財部, 『文化財關係法令集』, 2015
10. 이강민, 「건물과 건축」(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편,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11. 이규철 외,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12. 이상헌,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한국 전통건축의 이론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24권, 6호, 2015
13. 이화연·박소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원칙의 경향과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4권, 3호, 2018
14. 장호수 외, 『문화재 분류체계』, 문화재청, 2005
15. 전봉희·우동선·이우중, 「한국의 건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3호, 2004
16. 조원창, 『건축유적의 발굴과 해석』, 서경문화사, 2018
17. 주상훈 외, 『문화재 지정·분류체계 개선 기초연구』, 문화재청, 2016

접수(2018. 8. 14)
수정(1차: 2018. 10. 8)
게재확정(2018. 10. 18)